



### 「반려견스타일리스트 자격검정」 실기시험 공지사항

1. 시험시간 : 120분
2. 합격기준 : 등급별 공히 100점 만점에 60점 이상자
3. 채점 : 시험자 1인에 대해 2인의 감독위원이 평가항목을 절반씩 나누어 시행
4. 위그 준비
  - 1) 위그 견체 모형과 위그는 수험자가 준비해서 지참
  - 2) 위그 견체 모형은 딱딱한 재질로, 다리 부위는 움직일 수 있어야함
  - 3) 위그 털은 하얀 색깔만 인정
  - 4) 위그 털에 패턴이 없어야함 (위배시 향후 3년간 시험 응시불가)
  - 5) 위그의 눈, 코, 꼬리털이 있어야함  
(한 가지라도 없을 경우 채점에 영향을 주는 내용에 대하여 0점 처리)
  - 6) 위그는 브러싱 된 상태로 눈과 코를 부착하여 시험장에 입장  
(눈과 코를 위그 모형에 꽂거나 글루건, 본드 등으로 부착하는 것 허용)
  - 7) 시험용 위그 털의 길이
 

등급	털길이	비고
사범	13cm 이상	물리력을 가하지 않은 준비된 자연상태를 기준으로 셋업하는 경우 셋업부위 털의 최소 길이 임, 셋업 이외의 길이는 모두 7cm 이상이어야 함.
1급	13cm 이상	
2급	7cm 이상	
3급	7cm 이상	
  - 8) 꼬리와 꼬리털의 탈착이 가능 한 경우 꼬리를 빼고 꼬리 위치에 가로 세로 1cm이하 크기의 위치 를 표기하는 것을 허용. 탈착이 가능한 꼬리와 꼬리 털은 마무리 단계에서 부착하여 사용.
  - 9) 양쪽 귀는 따로 밴딩하여 시험실에 입장  
(위로 묶는 것은 작업에 방해가 되므로 금지. 양 갈래로 땀거나 묶는 것은 모두 허용)
  - 10) 다리부위 털이 움직이지 않도록 네 개의 발에 모두 고무 밴드를 고정하여 시험실에 입장
  - 11) 다리의 수평 유지를 위하여 발바닥 부위에 패드를 붙이는 것은 허용. 단, 패드 부착물은 패드의 크기보다 작아야 함.

#### 5. 기타

- 1) 시험 시작 전과 종료 후 정해진 장소에서 사진 촬영.
- 2) 반드시 신분증 지참
- 3) 학원명등 소속 단체를 유추할 수 있는 일체의 의류 착용 금지
- 4) 3급과 2급 응시자의 가위는 블런트 가위만 허용. 1급과 사범은 모든 미용도구 사용가능.
- 5) 테이블 암 설치를 허용하며 시험 시작 전 설치
- 6) 위그는 실제 개를 다루기 전 작업이므로 이를 염두하여 작업 .  
(꼬리를 뽑아 들거나 위그 견체를 위로 높이 드는 등의 행위 금지)
- 7) 3급 응시생의 경우 초벌 작업은 1시간 이내에 순서에 따라 진행.  
주어진 1시간 이전에 작업이 종료된 경우 조용히 거수하여 감독위원에게 알리고 채점 요청.  
초벌작업 채점이 종료되면 순서에 상관없이 마무리 작업진행

#### 6. 금지사항

- 1) 시험 도중에 테이블 암 설치
- 2) 테이블 위에 매트 등 설치
- 3) 앉아서 작업
- 4) 의자 위에 서서 작업
- 5) 채점에 방해가 되는 속임수(털을 손으로 눌러 모양을 만드는 행위 등)

#### 7. 실격 사항 (0점 처리)

- 1) 미용 전후 사진이 누락된 경우
- 2) 작업자가 상해를 입은 경우
- 3) 위그 털의 몸체 부위가 찢어진 경우
- 4) 부정행위자 (향후 3년간 시험응시 불가)
- 5) 위그 모형과 위그 견체가 위그준비 기준에 위배된 경우
- 6) 3급과 2급 수험자가 블런트 가위 이외의 가위를 사용한 경우
- 7) 위그 모형이 3회 이상 넘어지거나 2회 이상 바닥으로 추락한 경우
- 8) 시험 중 위그에서 수험자의 손 떨어짐이 5회 이상일 경우 (연속된 경우 3초를 1회로 함)
- 9) 위그 모형의 세 개의 발이 바닥에서 5회 이상 떨어질 경우 (연속된 경우 3초를 1회로 함)
- 10) 위그 모형의 방향이 3회 이상 바뀔 경우 (연속된 경우 3초를 1회로 함)